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03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조승환 · 김승수 · 김은혜
서천호 · 이성권 · 곽규택
윤용근 · 김성원 · 김태호
이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

④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면허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의 절차·방법과 제5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11.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12.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치를 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의무)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u> <u>1.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에 관한 사항</u> <u>2.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u>

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수칙에 관한 사
항

④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자는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
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
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방
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유효한 운
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하 “운전면허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보
유 여부 확인의 절차·방법과
제5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확인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